

변경 대비표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(주식)
- 변경 사항: 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- ②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- ③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- ④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⑤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오기 정정
(5% 초과 → 20%초과)
- ⑥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효력발생일: 2020.5.20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5.1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	<u>2020.3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5.1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	<u>2020.4.30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	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/ I, W 클래스 추가</u>

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

시행일 : 2020.5.20

내용 : I 클래스 가입자격
변경

5.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

2020.4.30 기준

가. 운용전문인력

5.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

2020.4.30 기준
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

구에 관한 사항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I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
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

나. 종류형 구조

액(I) : 집합투자기구 및 납
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
내국법인

액(I) : 법시행령 제 10 조제
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
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
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
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
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30
억 이상인 내국법인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기업 공시서식 변경 내 -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

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용 추가 반영

종류별 특징 기재

및 각 종류별 특징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

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

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

대상 변경사항 반영

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
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
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
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
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
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
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
모주)

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
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
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
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
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
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
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
주)

가. 투자 대상

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
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
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

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
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
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
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
권이 표시된 수익증권)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오기 정정

5) 집합투자증권 투자

5) 집합투자증권 투자

대상

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
의 5%를 초과하여 집합투
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
투자하는 행위. 다만 상장

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
의 20%를 초과하여 집합
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
투자하는 행위. 다만 상장

나. 투자 제한



		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음	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표준편차 : 12.15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표준편차 : 19.56%</u> <u>투자위험등급 : 2 등급(높은 위험)</u> 2020.5.20. : 3 등급 → 2 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5%초과~25%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 등급에서 2 등급으로 변경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2) 종류별 매입자격	I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	⑧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: 집합투자기구 및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⑧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: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 이상인 내국법인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1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1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1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1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7. 31 기준</u>	<u>2020. 4. 30 기준</u>

가. 회사 개요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나. 주요 업무			
(3) 업무위탁			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업데이트
5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업데이트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	
	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



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 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 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 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

〈신 설〉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

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탁원

에 관한 사항

변경사항 반영

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

가. 정기보고서

(2) 자산운용보고서

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

서

전자등록기관

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탁원

전자등록기관



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반영

나. 수시공시

(1) 신탁계약변경에 관

한 공시
